

구정질문 서면질문서

질문의원 : 이충현 의원

1. 법령위반(등촌동 636-44 정비공장관련 건축법 제12조 위반) 공무원에 대한 징계 및 사후관리
 - 부패방지법상 공직자가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보게 하면 부패행위로 규정되어 있음.
즉, 부패행위공무원에 대한 적절한 인사조치가 미흡함 <감사담당관>